

서울고법 1982. 3. 9.선고 82구1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
【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】, [고집1982(특별편),93]

【판시사항】

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을 부인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원고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기재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는 미흡하다.

【참조조문】

행정소송법 제9조

【참조판례】

1976. 3. 9. 선고, 74누7 판결 (요 행정소송법 제9조(10)1199면, 카11186, 집 24①행63, 공 534호9062)

【전문】

【원 고】 원고 1 외 1인

【피 고】 보건사회부장관

【대상판결】

【환송판결】 대법원(1981. 12. 22. 선고 80누516 판결)

【주문】



피고가 1976. 2. 14.자로 원고등에게 한 각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.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취지】

주문과 같다.

[이유]

원고등은 1969. 2. 14.시행된 제23회 의사국가고시에 각 합격한후, 1974. 9. 24. 피고로부터 각 의사면허(면 허번호 원고 1 이 11014호, 원고 2 가 11020호)를 갱신받은 사실 및 피고가 1976. 2. 14.자로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.

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이 위 제23회 의사국가고시의 합격에 대한 자신이 없어 위 시험주관부처인 국립보 건원의 당시 ○○과장 이던 소외 1 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을 꾀하고 그중 원고 1 은 1968. 12. 중순경과 1969. 1. 초순경 두차례에 결쳐 서울 종로구 누상동 (주소 생략) 에 있 는 당시 국립보건원 △△△△과장 인 소외 2 집에서 위 소외 2 에게 위 소외 1 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합계 금 700,000원을 교부하였으며, 원고 2 는 같은달 중순경, 서울 청계천 4가에 있는 천일다방에서 위 소 외 1 에게 금 200,000원을 교부하였으며, 원고들은 위 제23회 의사국가고시시험장에서 각 총 220개의 객관 식 문제중에서 절반정도를 백지로 남겨둔채 제출하고 후에 위 소외 1 은 ○○과장 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들의 백지답안지에 각 정답을 기재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양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안지로 오인채점케 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합격하였는바, 이 로 인하여 원고들은 1972. 12. 20.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, 이는 원고들이 관계공 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답안지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이에 터잡아 의사면허처분을 받은것이 되어 결국 위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에 귀착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을 제2호증,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은 그 기재자체도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중에서 절반을 백지 로 남겨둔채 제출하고 위 소외 1 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백지부분에 정답을 기재케 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양 제출케 하였다는 것인바, 이로써는 위 소외 1 이 어떠한 방법으 로 정답을 어느정도 기입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, 제8, 제17, 제 18 각 호증,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형사판결(위 을 제2호증, 갑 제21 호증의 1)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원고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, 위 을 제2호증,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는 미흡하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음을 내세운 피고의 이 사건 각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할 것인즉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, 소송 총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준(재판장) 김대진 임창원